

변경비교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투자신탁(H) [주식]

□ 정정 사유 : ① 반기 기준으로 갱신

②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③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효력 발생일 : 2024. 10. 17.

□ 정정 내용

항 목	정정 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습니다.
요약정보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 시장위험 등에 따른 기타 거시경제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 시장위험 등에 따른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트러스톤자산운용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4. 8. 30. 기준</u>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반기 기준으로 갱신	-	<u>2024. 6. 29. 기준</u>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4. 9. 30. 기준</u>
투자자유 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u> 공사가 <u>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u> 공사가 <u>보호하지</u>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u>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u> <u>호하지</u> 않습니다.	<u>지</u> 않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4. 9. 30.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에 관한 사 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4. 9. 30. 기준</u>
10.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 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 정사항 반영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 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 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 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 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 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 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 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u> <u>호하지</u>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 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 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 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 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 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 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 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 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 정사항 반영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 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 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 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 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 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 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 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 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 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 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습니다.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 신청 가능시간 (신 설)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 신청 가능시간 <u>〈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u> <table><tr><td rowspan="2">중도 환매 불가</td><td colspan="2">중도환매 허용</td></tr><tr><td>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td><td>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하지 않음</td></tr><tr><td>-</td><td>-</td><td>○</td></tr></table>	중도 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하지 않음	-	-	○
중도 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하지 않음									
-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4. 8. 30. 기준</u>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반기 기준으로 갱신	-	<u>2024. 6. 29.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반기 기준으로 갱신	-	<u>2024. 6. 29.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반기 기준으로 갱신	-	<u>2024. 6. 29. 기준</u>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회사연혁 추가	- (신 설)	<u>2024. 9. 30. 기준</u> <u>2022.11 종합자산운용회사로 전환</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4. 9. 30. 기준</u>								